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61 발의연월일: 2020. 7. 13.

발 의 자:김정호·전재수·정성호

신정훈 · 김병욱 · 김경협

박재호 · 양경숙 · 서동용

강선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지방자치법」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가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함.

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100만"을 "50만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설립 및 등기 등) ① (생	제4조(설립 및 등기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	②
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등록	
된 주민 수를 말한다) <u>100만</u>	<u>50만</u>
이상의 시(이하 "대도시"라 한	
다)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	
있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